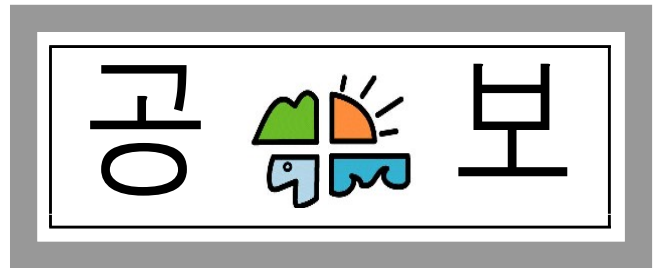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80호 2020년 8월 10일(월)

공 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 만리공원) 보상계획(열람)공시송달 공고 2

입법예고

-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 만리공원) 보상계획(열람)
공시송달 공고

속초시에서 추진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 만리공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통지하고자 보상계획 열람 공고문 등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8. 10.

속 초 시 장

1. 사업개요 : 도시계획시설(공원 : 만리공원)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속초시장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기간

속초시 교동 767-39 일원(만리공원)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05. 31.

4. 공고기간 : 2020. 8. 10. ~ 2020. 8. 25.(15일간)
5.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안 내 사 항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같음 합니다.
- 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및 기타 문의사항은 속초시청 공원녹지과 (☎033-639-379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시송달 대상자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편입 면적(㎡)	소 유 자		기타
				주 소	성 명	
속초시 교동	교동 796-8	전	23	(등) 속초시 교동 799-8 (송) 속초시 동해대로4332/ 속초시 동해대로 4330	이*순	
속초시 교동	교동 796-2	과	1,529	(등) 속초시 중앙동 472-3 (송)속초시 소평로162,30*동 1*0*호(조양동, 부영아파트)	심*무	
속초시 교동	교동 796-3	전	7,669			
속초시 교동	교동 796-4	대	400			
속초시 교동	교동 796-5	과	910			
속초시 교동	산236-12	임	13,232			
속초시 교동	산236-34	도	50			
속초시 교동	교동 767-39	전	54	(등)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4-242 (송)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91, 10*동 1*0*호 (풍덕천동, 용인수지신정마을1단지)	정*화	
속초시 교동	교동 산222-13	임	5	(등)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4-242 (송)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91, 10*동 1*0*호 (풍덕천동, 용인수지신정마을1단지)	정*화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가. 손실보전금의 경우,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보조금 지원목적과 상이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 지원근거 삭제가 필요
- 나. 기존 화물유치장려금의 지원범위가 컨테이너 화물로 한정된 사항을 컨테이너, 자동차, 건설기계, 벌크까지 확대 및 지원기준 마련

3. 주요내용

- 가. 손실보전금 규정 삭제 (제3조 지원대상)
 - － 손실발생액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여 운항지원 기준마련을 위해 삭제
- 나. 상용여객 지원대상에서 삭제 (제3조 지원대상)
 - － 한·러 무사증 제도 도입('14. 1. 1)으로 지원 불필요
- 다. 운항장려금 지원기간 삭제 (제3조 지원대상)

- 속초항 국제항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항여건 확보를 위해 기간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확대

라. 화물유치장려금 지원범위 확대 (제3조 지원대상)

- (기존) 차량, 컨테이너 → (확대) 차량, 컨테이너, 건설장비, 벌크화물
※ 자동차 4대, 건설기계 20톤, 벌크 20톤을 20피트 컨테이너 1대와 동일단위로 간주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신성장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신성장사업과 환동해물류팀
- 연락처 : 전화(033-639-2277), 팩스(033-635-836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및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신성장사업과 환동해물류팀(033-639-22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이란 국제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컨테이너, 자동차, 건설기계, 벌크를 말한다.
2. “신규화물”이란 속초항에서 처리한 화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가. 해상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한 화물

나.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한 화물

다. 항만하역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에 적하한 첫해의 화물

라.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으로 수출한 첫해의 화물

3. “순증화물”이란 지난해에 속초항에서 처리한 화물 실적에 당해 연도 실적을 대비하여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속초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의 기준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주, 해상운송기업,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의 화물유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화물에 대해 매년 화물유치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화물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기업에 중복 지원해서는 안 되며, 예산상황 및 운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물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가.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규화물

나. 제2조 제2호에 따른 순증화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

2. 화물유치장려금 지원 시 2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4대, 건설기계 20톤, 벌크 20톤을 20피트 컨테이너 1대와 동일단위로 간주

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해상운송기업 및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의 조기 활성화와 안정적·장기적 운항 여건 마련을 위하여 매년 운항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의 세부기준 및 조건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기업 간 체결한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체결 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지원금 신청 및 사정)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시기는 상·하반기 2회로 하되,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하반기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항중인 운항선사일 경우,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여 기한 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할 시, 속초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금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금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화물유치장려금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해양사무소, 속초세관 수출입 화물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

⑥ 운항장려금은 강원도 환동해본부의 입출항 자료, 기항지(러시아, 일본)항만 입출항 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예산 부담비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담비율은 강원도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속초시가 100분의 50을 부담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비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